

제253회 정례회  
2006. 9. 4.(월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

의회 운영 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-

## 1. 제안자 : 이 종 호 위원

## 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6년 9월 4일

○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

2006년 9월 4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## 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이 개정(법률 제7935호, 2006. 4.28. 공포)되어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품위 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준수 사항과 직권남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○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함.

(안 제3조제3호 내지 제4호)

○ 의원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.(안 제3조제5호)

○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며 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토록 함.(안 제4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준수 사항과 직권남용 금지 등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**붙 임 :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**